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물수·부대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물수·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수·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요지		별지 물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물수·부대보전의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물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별지 물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물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보전관계	물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별지 물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물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